

제11장

양형자료 통계분석 지원

1 개요

운영지원단은 통계분석과에 통계전문 실무관을 배치하여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양형현황 분석 및 양형인자 추출 작업 등을 통하여 구체적 양형기준 설정에 필요한 통계·분석자료를 다음과 같이 양형위원회에 제공하였다.

2 통계·분석자료 지원

(1) 지원 내용

제3기 대상사건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자료와 제1, 2기 대상사건의 양형기준 수정안 및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적용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전문위원단의 효율적인 연구업무를 지원하였다.

(2) 통계·분석 내용

주무전문위원의 요청에 따른 제3기 양형기준안 설정 대상범죄에 관한 통계자료와 제1, 2기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및 수정안에 관한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다. 그리고 제1기 대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적용현황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도 이루어졌다.

■ 제3기 양형기준안 대상범죄 ■

[1] 증권·금융범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 해당 기간 : 2006. 5. 1. ~ 2011. 4. 30.
 - 제443조 위반 범죄 및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 범죄
 - 해당기간 전체 구공판 사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비율 및 해당 적용법조 비율
 - 해당기간 선고된 분석대상 사건의 형량분포 및 사건리스트
- 증권·금융범죄 대상사건 리스트 및 판결문 출력
 - 대상사건 :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징역형, 1심 사건(※무죄, 소년범, 벌금형, 선고유예, 이종경합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또는 구 증권거래법)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제443조①, ②, 제174조①~③), 시세조종행위(제443조①, ②, 제176조①~④), 부정거래행위(제443조①, ②, 제178조①, ②)
- 상법 : 가장납입초과발행(제628조, 제629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허위재무제표 등 작성, 공시 등(제20조 ①, 제13조)
- 형법 : 배임수재(제357조①), 배임증재(제357조②)
- 특별법 : 금융기관 임직원의 관련 범죄(제5조~제9조)
- **상법위반 선고내역**
 - 대상사건 : 2009년 ~ 2010년 구공판(구약식 사건 제외) 1심 선고사건
 - 선고내역 :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 비율
- **증권·금융범죄 사건수**
 - 대상사건 : 2009년 ~ 2010년 구공판(구약식 사건 제외) 제1심 선고사건 중 징역형
 - 적용 법조 : 특별법 제8조(사금융 알선), 특별법 제9조(저축관련 부당행위),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증권신고서 미제출 공모,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3, 4호(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부당거래),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5호(금융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은행법 제66조 1항 제2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은행법 제67조 제1호(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2호(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상법 제626조(부실보고), 상법 제628조(납입가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대상 사건리스트**
 - 대상사건 : 2008. 1. ~ 2010. 12. 1심 선고사건(징역형 이상)

[2] 지식재산권범죄

- **지식재산권범죄 대상사건 리스트 및 판결문 출력**
 - 대상사건 :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징역형, 1심 사건(※무죄, 소년범, 벌금형, 선고유예, 이종경합범 제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비밀침해(제18조①, ②), 부정경쟁행위(제18조③)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제36조 ①~③)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 권리침해(특허법 제 225조, 실용신안법 제78조,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상표법 제93조, 저작권법 제136조), 허위표시(특허법 제228조, 실용신안법 제76조, 디자인보호법 제84조, 상표법 제95조), 사위행위(특허법 제229조, 실용신안법 제81조, 디자인보호법 제85조, 상표법 제96조)

[3] 교통범죄

-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비율
 - 대상사건 : 2009년 ~ 2010년 구공판(구약식 사건 제외) 1심 선고사건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기타 사건의 전체사건 대비 비율(벌금형, 실형 및 집행유예)

[4] 폭력범죄

- 폭력범죄 사건리스트
 - 대상사건 : 2006년 ~ 2011년 구공판(구약식 사건 제외) 1심 선고사건
 - 대상범죄 :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폭처법 해당사건

[5] 선거범죄

- 선거범죄 사건리스트
 - 대상사건 : 2006년 ~ 2011년 구공판(구약식 사건 제외) 1심 선고사건
 - 적용법조별 사건리스트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 제234조),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 후보자비방죄(제251조), 선거운동기간위반(제254조),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제257조)

[6] 제3기 대상범죄 전체

- 전체사건 대비 제1기 대상사건 비율
 - 대상사건 : 2006년 ~ 2008년 제1심 선고사건(고정사건 제외, 벌금형 이상)
 - 전체 1심 형사공판선고사건 대비 제1기 양형기준 대상사건 비율

■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

[1] 제2기 양형기준 대상 전체

- 전체사건 대비 제1기 대상사건 비율
 - 대상사건 : 2006년 ~ 2008년 1심 선고사건(고정사건 제외, 벌금형 이상)
 - 전체 1심 형사공판선고사건 대비 제1기 양형기준 대상사건 비율

■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

[1] 살인범죄

- 살인죄 양형기준 수정 시행 효과분석
 - 양형기준 수정(2011. 4. 15.) 이전 사건에 대한 시행 효과분석

[2] 성범죄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후 비교
 - 성범죄 1차 양형기준 수정(2010. 7. 14.) 전/후의 선고내역 및 평균형량 비교
 - 대상사건 : 제1기 양형기준 운영점검 대상사건
- 성범죄 대상사건 리스트
 - 대상사건 : 2009. 7. 1. ~ 2011. 5. 31. 까지 선고된 양형기준 대상사건
 - 양형기준 부준수(하한부준수 포함)된 사건리스트
 - 전체(비해당 포함)에서 성범죄 사건의 연령별 선고내역을 보일 것(20세 미만 ~ 70세 이상)
 - 성범죄 세부죄명별 선고내역 비율(무기징역, 실형, 집행유예)
 - 양형기준 대상사건 중 집행유예 사건리스트(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구분)

[3] 제1기 양형기준 대상 전체

-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양형기준 명시적 기재율
 - 범죄군, 법원별 명시적 기재율
- 전체사건 대비 제1기 대상사건 비율
 - 대상사건 : 2006년 ~ 2008년 1심 선고사건(고정사건 제외, 벌금형 이상)
 - 전체 1심 형사공판선고사건 대비 제1기 양형기준 대상사건 비율

제12장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I 통계분석 내용

1 개요

운영지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및 2012년에 제3기 양형기준안 대상사건의 양형자료조사, 제1기 및 제2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등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계분석을 위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2 분석 목표

제3기 양형기준 설정대상인 8개 범죄(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선거, 방화, 공갈, 조세범죄)를 2회에 걸쳐서 양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양형조사 결과는 보다 정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은 이미 시행중인 제1기 및 제2기 양형기준 대상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 준수율, 양형이유 명시적 기재여부, 특별양형인자의 유무에 따른 형량 비교분석, 특별양형인자와 형량과의 연관성 정도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다만 제2기 양형기준은 양형기준 시행 후 경과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통계분석의 의미가 없으므로 금번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3 분석 방법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는 변수(Variable)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가. 빈도분석

조사된 양형인자를 단일 변수로 하여 그 도수분포 현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분포현황을 파악하는 분석이다.

나. 카이제곱 검정(χ^2 검정)

두 개의 범주형(categorical data) 변수를 결합하여 도수분포 현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정 독립변수(양형인자)가 종속변수(형종 · 형의 집행 여부)에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통계분석 프로그램의 모든 통계분석은 가설검정에 필요한 검정 통계치의 유의확률(p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의확률(p값, p-value)이란 귀무가설을 전제로 검정통계치가 나타날 가능성을 측정하는 확률을 말한다. 이 분석에서는 유의수준을 5%(0.05)로 설정하여,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을 경우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검정방법을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test)이라고 한다.

다. 분산분석 및 T-test

각각의 양형인자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의 항목이 2개일 때는 T-test를 사용하고, 3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산분석을 실시하며, 위의 교차분석의 분석내용과 다른 것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가 연속형변수(continuous variable)라는 것이다.

이들 분산분석 및 T-test는 각 양형인자의 항목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유의확률(p) 값이 유의수준(0.05)보다 작은 경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할 수 있다.

라.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종속변수(형량, 집행유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자들을 반영하여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나타내어 이들 인자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정도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며, 추후에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에 대한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에는 종속변수가 연속형인 형량분석에 사용하는 단순회귀분석, 중회귀분석 등과 종속변수가 집행유예 여부와 같이 명목형 혹은 범주형인 경우에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포함된다.

II 제3기 대상범죄 양형자료조사 통계분석

1 양형자료조사 현황

가. 개요

제3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 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방화, 선거, 조세, 공갈범죄 등의 8개 범죄군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 마련에 필요한 양형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양형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나. 분석 대상

2006. 1. 1. ~ 2011. 12. 31. 기간에 선고된 양형기준 대상범죄 사건들 중에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 단일범(동종 경합범 포함)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조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사건의 수가 적은 죄명의 경우는 2012년 상반기에 선고된 사건까지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다. 특히 선거범죄는 벌금형 선고 사건까지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다.

다. 분석 방법

양형기준안 대상범죄에 대하여 세부죄명 또는 적용 법조별로 분류하여 양형인자와 형량 및 선고내역(집행유예 여부)간의 연관성 및 형량 차이를 검정하였고, 선거범죄의 경우는 벌금액수에 대한 차이도 검정하였다.

다만 양형기준 설정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8개의 범죄군을 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범죄와 선거, 방화, 공갈, 조세범죄로 나누어 각각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라. 분석 개관

전체 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분석 내용은 양형기준 마련시기 및 일정에 따라서 양형위원회에 보고되었다.

회의내용	보고일자	분석결과 범죄
양형위원회 제5차 임시회의	2011. 10. 24.	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양형위원회 제41차 회의	2012. 5. 7.	선거범죄
양형위원회 제43차 회의	2012. 8. 20.	방화, 공갈, 조세범죄(보고 예정)

2 제1차 대상범죄(폭력,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중에서 제5차 공청회와 관련하여 4개의 범죄군(폭력, 교통, 지식재산권, 증권·금융범죄)의 전체 8,098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가. 대상범죄 세부죄명별 사건수

전체 8,098건의 범죄군별 세부죄명 사건 수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범죄군	세부죄명	사건 구분		전 체
		고 합	고 단	
폭력 범죄	상해	5	443	448
	상해치사	203	0	203
	존속상해	3	106	109
	존속상해치사	32	0	32
	존속폭행	0	1	1
	중상해	176	6	182
	특수폭행치상	0	1	1
	특수협박	1	46	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4	17	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236	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7	63	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0	31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0	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	2	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3	98	101	

범죄군	세부죄명	사건 구분		전 체
		고 합	고 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0	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0	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협박)	0	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 · 흥기등상해)	15	4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2	23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0	14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	1	38	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폭행)	0	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협박)	0	33	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 흥기등폭행)	0	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 흥기등상해)	0	16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흥기등상해)	6	874	8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흥기등존속상해)	2	43	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흥기등존속폭행)	0	6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흥기등존속협박)	1	13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흥기등폭행)	0	208	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흥기등협박)	6	617	623
	폭행	8	61	69
	폭행치사	203	0	203
	폭행치상	12	123	135
협박	0	62	62	
전 체	893	3,194	4,087	
교통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0	902	9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0	387	3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0	65	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	647	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0	308	30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7	251	25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12	194	206
	전 체	19	2,754	2,773

범죄군	세부죄명	사건 구분		전 체
		고 합	고 단	
지식 재산권 범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8	150	168
	상표법위반	0	218	218
	저작권법위반	0	56	56
	전 체	18	424	442
증권 · 금융 범죄	배임수재	59	70	129
	배임증재	34	78	112
	변호사법위반	11	43	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0	2	2
	증권거래법위반	128	53	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64	24	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79	72	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4	6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32	17	49
	전 체	431	365	796
합 계		1,361	6,736	8,098

내용을 보면 상해, 폭행, 협박으로 구성된 폭력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교통, 증권·금융, 지식재산권범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대상사건의 연도별 사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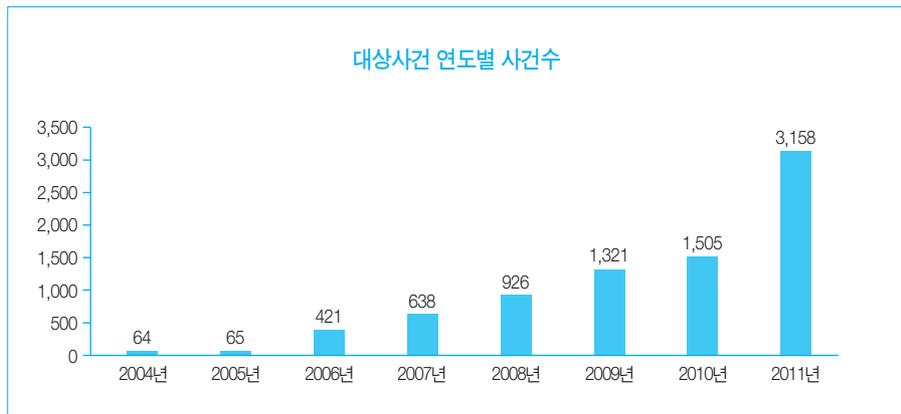
대상사건에 대한 선고일 기준 연도별 사건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범죄군		선고연도								전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폭력범죄	수	43	39	286	435	600	751	607	1,326	4,087
	비율	1.1	1.0	7.0	10.6	14.7	18.4	14.9	32.4	100.0
교통범죄	수	21	26	18	13	24	188	684	1,799	2,773
	비율	0.8	0.9	0.6	0.5	0.9	6.8	24.7	64.9	100.0
지식재산권 범죄	수	0	0	20	40	108	146	100	28	442
	비율	0.0	0.0	4.5	9.0	24.4	33.0	22.6	6.3	100.0

단위 : 명, %

범죄군		선고연도								전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권·금융 범죄	수	0	0	97	150	194	236	114	5	796
	비율	0.0	0.0	12.2	18.8	24.4	29.6	14.3	0.6	100.0
전체	수	64	65	421	638	926	1,321	1,505	3,158	8,098
	비율	0.8	0.8	5.2	7.9	11.4	16.3	18.6	39.0	100.0



연도별 조사건수를 보면 올해 2011년의 사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0년 순으로 나타나서 2009년~2011년에 선고된 사건이 전체 조사사건의 73.9%인 5,984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근 사건에 비중을 둔 이유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는데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에 선고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다. 법원별 사건 수

대상사건들에 대한 지방법원(지원 포함)의 사건 수를 범죄군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지방법원		범죄군				전체
		폭력범죄	교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증권·금융범죄	
서울중앙	수	285	107	74	209	675
	비율	42.2	15.9	11.0	31.0	100.0

단위 : 명, %

지방법원		범죄군				전 체
		폭력범죄	교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증권·금융범죄	
서울동부	수	156	124	39	22	341
	비율	45.7	36.4	11.4	6.5	100.0
서울남부	수	292	167	13	42	514
	비율	56.8	32.5	2.5	8.2	100.0
서울북부	수	248	135	36	12	431
	비율	57.5	31.3	8.4	2.8	100.0
서울서부	수	183	75	29	31	318
	비율	57.5	23.6	9.1	9.7	100.0
의정부	수	274	304	32	29	639
	비율	42.9	47.6	5.0	4.5	100.0
인천	수	373	213	33	58	677
	비율	55.1	31.5	4.9	8.6	100.0
수원	수	465	174	78	90	807
	비율	57.6	21.6	9.7	11.2	100.0
춘천	수	64	6	3	17	90
	비율	71.1	6.7	3.3	18.9	100.0
대전	수	337	412	10	38	797
	비율	42.3	51.7	1.3	4.8	100.0
청주	수	75	7	5	14	101
	비율	74.3	6.9	5.0	13.9	100.0
대구	수	383	352	15	53	803
	비율	47.7	43.8	1.9	6.6	100.0
부산	수	385	339	29	74	827
	비율	46.6	41.0	3.5	8.9	100.0
울산	수	49	12	8	25	94
	비율	52.1	12.8	8.5	26.6	100.0
창원	수	128	40	14	19	201
	비율	63.7	19.9	7.0	9.5	100.0
광주	수	283	291	11	30	615
	비율	46.0	47.3	1.8	4.9	100.0

단위 : 명, %

지방법원		범죄군				전 체
		폭력범죄	교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증권·금융범죄	
전주	수	54	8	9	27	98
	비율	55.1	8.2	9.2	27.6	100.0
제주	수	53	7	4	6	70
	비율	75.7	10.0	5.7	8.6	100.0
전체	수	4,087	2,773	442	796	8,098
	비율	50.5	34.2	5.5	9.8	100.0

법원별 조사건수는 법원의 선고건수에 비례하여 조사를 하였다. 특이한 점은 증권·금융범죄가 전체 796건 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9건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증권·금융범죄의 특성상 많은 사건들이 서울중앙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조사 내용

조사대상 전체의 양형인자에 대한 빈도를 범죄군으로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1) 피고인 신병

단위 : 명, %

범죄군		피고인 신병				전 체
		불구속	구 속	구속 후 석방	별건구속	
폭력범죄	수	2,444	1,431	106	53	4,034
	비율	60.6	35.5	2.6	1.3	100.0
교통범죄	수	2,340	325	25	17	2,707
	비율	86.4	12.0	0.9	0.6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321	91	26	2	440
	비율	73.0	20.7	5.9	0.5	100.0
증권·금융범죄	수	464	260	47	15	786
	비율	59.0	33.1	6.0	1.9	100.0
전체	수	5,569	2,107	204	87	7,967
	비율	69.9	26.4	2.6	1.1	100.0

피고인 신병은 폭력범죄가 구속 비율이 35.5%로 가장 높았고, 증권·금융범죄(33.1%), 지식재산권범죄(20.7%), 교통범죄(12.0%) 순으로 나타났다.

(2) 변호인 여부

단위 : 명, %

범죄군		변호인 여부			전 체
		사 선	국 선	없 음	
폭력범죄	수	755	2,606	726	4,087
	비율	18.5	63.8	17.8	100.0
교통범죄	수	334	685	1,754	2,773
	비율	12.0	24.7	63.3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234	68	140	442
	비율	52.9	15.4	31.7	100.0
증권·금융범죄	수	609	107	80	796
	비율	76.5	13.4	10.1	100.0
전체	수	1,932	3,466	2,700	8,098
	비율	23.9	42.8	33.3	100.0

변호인 여부는 폭력범죄의 경우 국선의 비율이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식재산권범죄와 증권·금융범죄의 경우는 사선변호인의 비율이 52.9%와 76.5%로 높게 나타났다. 교통범죄의 경우는 변호인 없음의 비율이 63.3%로 높게 나타났다.

(3) 제1심 종국내역

(가) 선고내역

단위 : 명, %

범죄군		제1심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폭력범죄	수	1,064	3,023	4,087
	비율	26.0	74.0	100.0
교통범죄	수	377	2,396	2,773
	비율	13.6	86.4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48	394	442
	비율	10.9	89.1	100.0

단위 : 명, %

범죄군		제1심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증권·금융범죄	수	216	580	796
	비율	27.1	72.9	100.0
전체	수	1,705	6,393	8,098
	비율	21.1	78.9	100.0

조사사건의 제1심 선고내역을 보면 집행유예의 비율이 지식재산권범죄(89.1%) > 교통범죄(86.4%) > 폭력범죄(74.0%) > 증권·금융범죄(72.9%) 순으로 나타났다.

(나) 선고 형량

각 범죄군별 징역형의 선고형량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범죄군		징역 형량(개월)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폭력범죄	수	17	21	223	28	871	3	536	10	319	367	5	1	1	1,075	4
	비율	0.4	0.5	5.5	0.7	21.3	0.1	13.1	0.2	7.8	9.0	0.1	0.0	0.0	26.3	0.1
교통범죄	수	8	39	587	49	1,145	1	481	0	221	156	11	1	0	30	0
	비율	0.3	1.4	21.2	1.8	41.3	0.0	17.3	0.0	8.0	5.6	0.4	0.0	0.0	1.1	0.0
지식재산 권범죄	수	1	0	18	0	123	0	121	0	82	72	4	0	2	17	0
	비율	0.2	0.0	4.1	0.0	27.8	0.0	27.4	0.0	18.6	16.3	0.9	0.0	0.5	3.8	0.0
증권·금융 범죄	수	2	0	19	3	133	1	150	0	121	167	6	2	4	95	0
	비율	0.3	0.0	2.4	0.4	16.7	0.1	18.8	0.0	15.2	21.0	0.8	0.3	0.5	11.9	0.0
전체	수	28	60	847	80	2,272	5	1,288	10	743	762	26	4	7	1,217	4
	비율	0.3	0.7	10.5	1.0	28.1	0.1	15.9	0.1	9.2	9.4	0.3	0.0	0.1	15.0	0.0
범죄군		징역 형량(개월)												전 체		
		21	24	29	30	36	42	48	60	72	84	96	108		120	
폭력범죄	수	1	257	0	70	139	14	46	44	11	16	4	2	2	4,087	
	비율	0.0	6.3	0.0	1.7	3.4	0.3	1.1	1.1	0.3	0.4	0.1	0.0	0.0	100.0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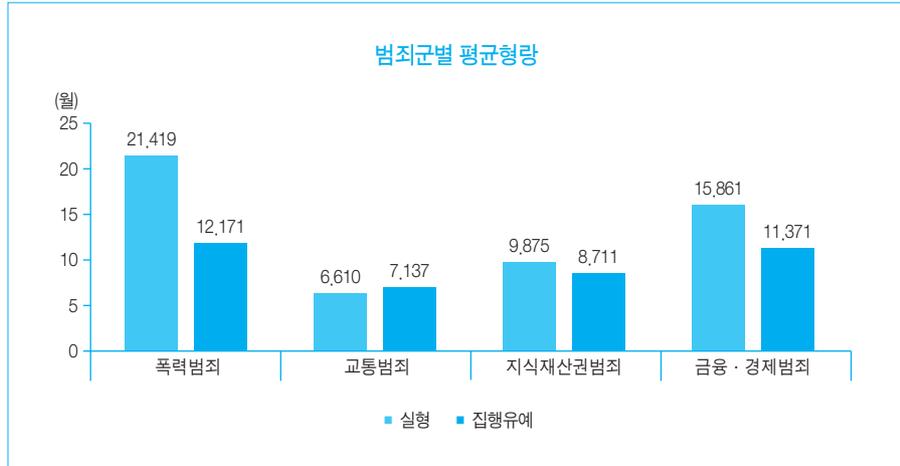
범죄군	징역 형량(개월)														전 체
	21	24	29	30	36	42	48	60	72	84	96	108	120		
교통범죄	수	0	6	0	27	11	0	0	0	0	0	0	0	0	2,773
	비율	0.0	0.2	0.0	1.0	0.4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0	2	0	0	0	0	0	0	0	0	0	0	442	
	비율	0.0	0.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증권·금융범죄	수	0	27	1	45	12	6	1	1	0	0	0	0	796	
	비율	0.0	3.4	0.1	5.7	1.5	0.8	0.1	0.1	0.0	0.0	0.0	0.0	100.0	
전체	수	1	292	1	142	162	20	47	45	11	16	4	2	8,098	
	비율	0.0	3.6	0.0	1.8	2.0	0.2	0.6	0.6	0.1	0.2	0.0	0.0	100.0	

(다) 징역형 평균형량

각 범죄군별 실형 및 집행유예의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월

범죄군	집행유예 여부	수	평 균	표준편차
폭력범죄	실형	1,064	21,4192	18,7715
	집행유예	3,023	12,1714	6,7162
	합계	4,087	14,5789	11,8956
교통범죄	실형	377	6,6101	4,4536
	집행유예	2,396	7,1369	3,8640
	합계	2,773	7,0653	3,9526
지식재산권범죄	실형	48	9,8750	3,3110
	집행유예	394	8,7107	3,1490
	합계	442	8,8371	3,1838
증권·금융범죄	실형	216	15,8611	9,4529
	집행유예	580	11,3707	6,5438
	합계	796	12,5892	7,7035
합계	실형	1,705	17,1155	16,5357
	집행유예	6,393	9,9986	6,0815
	합계	8,098	11,4970	9,7550



폭력범죄의 경우 실형의 평균형량이 21.4개월이고, 집행유예(본형) 형량이 12.2개월로 나타났으며, 편차를 보면 실형의 표준편차가 18.8개월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세부범죄별로 형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통범죄는 실형의 평균형량이 6.6개월이고, 집행유예(본형) 형량이 7.1개월로 집행유예(본형)의 형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식재산권범죄는 실형이 9.9개월, 집행유예(본형) 형량이 8.7개월로 비슷한 형량 차이를 보였다. 증권·금융범죄는 실형의 평균형량이 15.9개월, 집행유예(본형) 형량이 11.4개월로 나타났다. 이들 평균형량은 범죄군 전체에 대한 평균형량으로 범죄군에 따라서 편차가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해당 범죄군의 세부죄명에 따라서 기준형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군별 세부죄명에 대한 분석을 보면 보다 자세한 세부죄명별 평균형량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4) 피고인 인구통계

(가) 피고인 국적 및 성별

단위 : 명, %

범죄군		국 적		성 별		전 체
		내국인	외국인	남 자	여 자	
폭력범죄	수	3,971	116	3,911	176	4,087
	비율	97.2	2.8	95.7	4.3	100.0
교통범죄	수	2,768	5	2,585	188	2,773
	비율	99.8	0.2	93.2	6.8	100.0

단위 : 명, %

범죄군		국 적		성 별		전 체
		내국인	외국인	남 자	여 자	
지식재산권범죄	수	439	3	401	41	442
	비율	99.3	0.7	90.7	9.3	100.0
증권·금융범죄	수	796	0	744	52	796
	비율	100.0	0.0	93.5	6.5	100.0
전체	수	7,974	124	7,641	457	8,098
	비율	98.5	1.5	94.4	5.6	100.0

피고인 국적은 외국인인 경우가 폭력범죄(2.8%) > 지식재산권범죄(0.7%) > 교통범죄(0.2%) > 증권·금융범죄(0.0%) 순으로 사건의 수가 미미하였다.

피고인 성별은 여자인 경우가 지식재산권범죄(9.3%) > 교통범죄(6.8%) > 증권·금융범죄(6.5%) > 폭력범죄(4.3%) 순으로 나타났다.

(나) 피고인 학력

단위 : 명, %

범죄군		학 력						전 체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폭력범죄	수	58	432	636	1,452	571	30	3,179
	비율	1.8	13.6	20.0	45.7	18.0	0.9	100.0
교통범죄	수	16	246	318	866	521	24	1,991
	비율	0.8	12.4	16.0	43.5	26.2	1.2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2	32	44	148	167	10	403
	비율	0.5	7.9	10.9	36.7	41.4	2.5	100.0
증권·금융범죄	수	4	22	35	234	403	61	759
	비율	0.5	2.9	4.6	30.8	53.1	8.0	100.0
전체	수	80	732	1,033	2,700	1,662	125	6,332
	비율	1.3	11.6	16.3	42.6	26.2	2.0	100.0

피고인의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인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비율이 70.9%로 나타났다.

(다) 피고인 직업

피고인의 직업을 보면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단위 : 명, %

직업		범죄군				전체
		폭력범죄	교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증권·금융범죄	
무직	수	1,039	445	49	178	1,711
	비율	60.7	26.0	2.9	10.4	100.0
기업 대표이사	수	15	8	34	120	177
	비율	8.5	4.5	19.2	67.8	100.0
기업체 임원	수	4	2	19	62	87
	비율	4.6	2.3	21.8	71.3	100.0
회사원	수	539	674	80	156	1,449
	비율	37.2	46.5	5.5	10.8	100.0
자영업 (점포업자 등)	수	579	362	200	115	1,256
	비율	46.1	28.8	15.9	9.2	100.0
교육직 (교사·강사등)	수	20	15	3	6	44
	비율	45.5	34.1	6.8	13.6	100.0
대학(전문대 포함) 교수	수	1	2	0	5	8
	비율	12.5	25.0	0.0	62.5	100.0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수	1	5	0	7	13
	비율	7.7	38.5	0.0	53.8	100.0
기타 전문직	수	23	25	3	6	57
	비율	40.4	43.9	5.3	10.5	100.0
농업·어업 임업·축산업	수	114	119	0	12	245
	비율	46.5	48.6	0.0	4.9	100.0
판·검사	수	0	0	0	1	1
	비율	0.0	0.0	0.0	100.0	100.0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수	0	0	0	2	2
	비율	0.0	0.0	0.0	100.0	100.0
경찰공무원	수	0	0	0	1	1
	비율	0.0	0.0	0.0	100.0	100.0

단위 : 명, %

직업		범죄군				전체
		폭력범죄	교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증권·금융범죄	
공공기관 임직원	수	0	1	0	7	8
	비율	0.0	12.5	0.0	87.5	100.0
정당 및 특수단체 임직원	수	1	0	0	11	12
	비율	8.3	0.0	0.0	91.7	100.0
군인	수	14	4	0	1	19
	비율	73.7	21.1	0.0	5.3	100.0
기타 공무원	수	8	3	0	8	19
	비율	42.1	15.8	0.0	42.1	100.0
언론인	수	2	0	0	4	6
	비율	33.3	0.0	0.0	66.7	100.0
학생	수	98	31	2	3	134
	비율	73.1	23.1	1.5	2.2	100.0
주부	수	24	46	1	9	80
	비율	30.0	57.5	1.3	11.3	100.0
공원	수	31	14	0	0	45
	비율	68.9	31.1	0.0	0.0	100.0
운전사	수	193	324	2	7	526
	비율	36.7	61.6	0.4	1.3	100.0
일용직 (노무종사자)	수	742	407	6	5	1,160
	비율	64.0	35.1	0.5	0.4	100.0
종업원	수	290	118	17	5	430
	비율	67.4	27.4	4.0	1.2	100.0
종교인	수	22	8	0	1	31
	비율	71.0	25.8	0.0	3.2	100.0
무속인	수	6	1	0	0	7
	비율	85.7	14.3	0.0	0.0	100.0
기타	수	321	159	26	64	570
	비율	56.3	27.9	4.6	11.2	100.0
전체	수	4,087	2,773	442	796	8,098
	비율	50.5	34.2	5.5	9.8	100.0

(라) 건강상태

단위 : 명, %

범죄군		건강상태			전 체
		양 호	중 증	경 증	
폭력범죄	수	2,849	61	515	3,425
	비율	83.2	1.8	15.0	100.0
교통범죄	수	1,999	51	299	2,349
	비율	85.1	2.2	12.7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357	4	72	433
	비율	82.4	0.9	16.6	100.0
증권·금융범죄	수	611	6	167	784
	비율	77.9	0.8	21.3	100.0
전체	수	5,816	122	1,053	6,991
	비율	83.2	1.7	15.1	100.0

(마) 경력 및 병력

단위 : 명, %

범죄군		알코올중독 경력		마약복용 경력		정신병력		전 체
		없 음	있 음	없 음	있 음	없 음	있 음	
폭력범죄	수	3,979	108	4,042	45	3,991	96	4,087
	비율	97.4	2.6	98.9	1.1	97.7	2.3	100.0
교통범죄	수	2,765	8	2,763	10	2,769	4	2,773
	비율	99.7	0.3	99.6	0.4	99.9	0.1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441	1	438	4	439	3	442
	비율	99.8	0.2	99.1	0.9	99.3	0.7	100.0
증권·금융범죄	수	796	0	794	2	793	3	796
	비율	100.0	0.0	99.7	0.3	99.6	0.4	100.0
전체	수	7,981	117	8,037	61	7,992	106	8,098
	비율	98.6	1.4	99.2	0.8	98.7	1.3	100.0

(바) 범행당시 심신장애 여부

단위 : 명, %

범죄군		범행 당시 심신장애 여부			전 체
		심신미약	농아자	없 음	
폭력범죄	수	432	1	3,654	4,087
	비율	10.6	0.0	89.4	100.0
교통범죄	수	61	0	2,712	2,773
	비율	2.2	0.0	97.8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2	0	440	442
	비율	0.5	0.0	99.5	100.0
증권·금융범죄	수	0	0	796	796
	비율	0.0	0.0	100.0	100.0
전체	수	495	1	7,602	8,098
	비율	6.1	0.0	93.9	100.0

(5) 전과 여부

(가) 초범 여부

단위 : 명, %

범죄군		초범 여부		전 체
		아 님	해 당	
폭력범죄	수	2,921	1,166	4,087
	비율	71.5	28.5	100.0
교통범죄	수	2,211	562	2,773
	비율	79.7	20.3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279	163	442
	비율	63.1	36.9	100.0
증권·금융범죄	수	541	255	796
	비율	68.0	32.0	100.0
전체	수	5,952	2,146	8,098
	비율	73.5	26.5	100.0

초범 여부에서는 지식재산권범죄(36.9%) > 증권·금융범죄(32.0%) > 폭력범죄(28.5%) > 교통범죄(20.3%) 순으로 나타났다.

(나) 동종 및 이종 전과 여부

단위 : 명, %

범죄군		동종 전과 여부		이종 전과 여부		전 체
		없 음	있 음	없 음	있 음	
폭력범죄	수	2,002	2,085	1,460	2,627	4,087
	비율	49.0	51.0	35.7	64.3	100.0
교통범죄	수	875	1,898	1,186	1,587	2,773
	비율	31.6	68.4	42.8	57.2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316	126	207	235	442
	비율	71.5	28.5	46.8	53.2	100.0
증권·금융범죄	수	722	74	266	530	796
	비율	90.7	9.3	33.4	66.6	100.0
전체	수	3,915	4,183	3,119	4,979	8,098
	비율	48.3	51.7	38.5	61.5	100.0

범죄군별 동종 및 이종 전과 여부를 보면 동종 전과의 경우 교통범죄가 68.4%로 아주 높게 나타났고, 폭력범죄(51.0%), 지식재산권범죄(2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증권·금융범죄가 9.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종 전과의 경우는 증권·금융범죄(66.6%) > 폭력범죄(64.3%) > 교통범죄(57.2%) > 지식재산권범죄(53.2%)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

동종 전과 여부		이종 전과 여부		전 체
		없 음	있 음	
없음	수	2,146	1,769	3,915
	비율	54.8	45.2	100.0
있음	수	973	3,210	4,183
	비율	23.3	76.7	100.0
전체	수	3,119	4,979	8,098
	비율	38.5	61.5	100.0

그리고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모두 있는 경우는 아래 내용에서와 같이 3,210명으로 전체사건 8,098건의 39.6%에 해당하고, 전과가 있는 경우가 5,952건으로 전체사건 8,098건의 73.5%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다.

(다) 동종 전과 재범기간

단위 : 명, %

범죄군		동종 전과 재범기간							전체
		6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폭력범죄	수	140	191	316	236	157	124	856	2,020
	비율	6.9	9.5	15.6	11.7	7.8	6.1	42.4	100.0
교통범죄	수	229	296	393	271	147	94	430	1,860
	비율	12.3	15.9	21.1	14.6	7.9	5.1	23.1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19	20	15	13	12	4	31	114
	비율	16.7	17.5	13.2	11.4	10.5	3.5	27.2	100.0
증권·금융범죄	수	13	3	5	9	4	5	19	58
	비율	22.4	5.2	8.6	15.5	6.9	8.6	32.8	100.0
전체	수	401	510	729	529	320	227	1,336	4,052
	비율	9.9	12.6	18.0	13.1	7.9	5.6	33.0	100.0

(라) 이종 전과 재범기간

단위 : 명, %

범죄군		이종 전과 재범기간							전체
		6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폭력범죄	수	162	266	430	321	240	167	984	2,570
	비율	6.3	10.4	16.7	12.5	9.3	6.5	38.3	100.0
교통범죄	수	58	95	199	147	106	86	874	1,565
	비율	3.7	6.1	12.7	9.4	6.8	5.5	55.8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21	13	29	31	19	12	105	230
	비율	9.1	5.7	12.6	13.5	8.3	5.2	45.7	100.0
증권·금융범죄	수	69	40	78	54	39	20	221	521
	비율	13.2	7.7	15.0	10.4	7.5	3.8	42.4	100.0
전체	수	310	414	736	553	404	285	2,184	4,886
	비율	6.3	8.5	15.1	11.3	8.3	5.8	44.7	100.0

(마) 누범 전과 여부

단위 : 명, %

범죄군		누범 전과		전 체
		없 음	있 음	
폭력범죄	수	3,824	263	4,087
	비율	93.6	6.4	100.0
교통범죄	수	2,715	58	2,773
	비율	97.9	2.1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440	2	442
	비율	99.5	0.5	100.0
증권·금융범죄	수	783	13	796
	비율	98.4	1.6	100.0
전체	수	7,762	336	8,098
	비율	95.9	4.1	100.0

(바) 집행유예 중, 가석방 중, 형 집행 정지 중 여부

단위 : 명, %

범죄군		집행유예 중 여부		가석방 중 여부		전 체
		아 님	해 당	아 님	해 당	
폭력범죄	수	3,930	157	4,084	3	4,087
	비율	96.2	3.8	99.9	0.1	100.0
교통범죄	수	2,627	146	2,773	0	2,773
	비율	94.7	5.3	100.0	0.0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437	5	442	0	442
	비율	98.9	1.1	100.0	0.0	100.0
증권·금융범죄	수	779	17	796	0	796
	비율	97.9	2.1	100.0	0.0	100.0
전체	수	7,773	325	8,095	3	8,098
	비율	96.0	4.0	100.0	0.0	100.0

집행유예 중 여부에는 교통범죄가 5.3%로 나타났고, 폭력범죄(3.8%), 증권·금융범죄(2.1%), 지식재산권범죄(1.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석방 중 여부는 폭

력범죄에서만 3건(0.1%)이 나타났으며, 형 집행 정지 중인 사건은 없었다.

(6) 제37조 전단 및 후단 경합범 유무

단위: 명, %

범죄군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제37조 후단 전과 유무		전 체
		아 님	해 당	없 음	있 음	
폭력범죄	수	3,623	464	4,004	83	4,087
	비율	88.6	11.4	98.0	2.0	100.0
교통범죄	수	2,309	464	2,758	15	2,773
	비율	83.3	16.7	99.5	0.5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227	215	438	4	442
	비율	51.4	48.6	99.1	0.9	100.0
증권·금융범죄	수	550	246	747	49	796
	비율	69.1	30.9	93.8	6.2	100.0
전체	수	6,709	1,389	7,947	151	8,098
	비율	82.8	17.2	98.1	1.9	100.0

이번 조사대상 사건들은 일죄사건의 단일범사건을 기준으로 동종경합범까지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제37조 전단 경합범 유무에서 ‘없음’은 단일범(일죄사건)을 나타내었고, ‘있음’은 동종경합범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37조 전단 경합범 여부가 지식재산권범죄(48.6%), 증권·금융범죄(3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단일범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사대상 사건이 충분하지 않은 범죄군의 세부죄명의 경우에는 동종경합범까지 포함한 결과로 범죄의 특성상 지식재산권범죄 및 증권·금융범죄는 사건의 수도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동종경합범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비율은 증권·금융범죄가 6.2%로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범죄, 교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등은 2%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7) 공범

(가) 공범 여부

단위 : 명, %

범죄군		공범 여부		전 체
		단독범	공 범	
폭력범죄	수	3,588	499	4,087
	비율	87.8	12.2	100.0
교통범죄	수	2,771	2	2,773
	비율	99.9	0.1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282	160	442
	비율	63.8	36.2	100.0
증권·금융범죄	수	469	327	796
	비율	58.9	41.1	100.0
전체	수	7,110	988	8,098
	비율	87.8	12.2	100.0

범죄별 공범 여부는 범죄의 특성상 증권·금융범죄가 공범의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가장 높은 41.1%로 나타났고, 지식재산권범죄(36.2%), 폭력범죄(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통범죄는 0.1%로 아주 낮은 값을 보였다.

(나) 공범의 유형

단위 : 명, %

범죄군		공범 유형				전 체
		공동정범 적극가담	공동정범 보통가담	공동정범 소극가담	교사범	
폭력범죄	수	456	33	7	3	499
	비율	91.4	6.6	1.4	0.6	100.0
교통범죄	수	2	0	0	0	2
	비율	100.0	0.0	0.0	0.0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153	4	3	0	160
	비율	95.6	2.5	1.9	0.0	100.0

단위 : 명, %

범죄군		공범 유형				전 체
		공동정범 적극가담	공동정범 보통가담	공동정범 소극가담	교사범	
증권·금융범죄	수	311	10	6	0	327
	비율	95.1	3.1	1.8	0.0	100.0
전체	수	922	47	16	3	988
	비율	93.3	4.8	1.6	0.3	100.0

(8) 범행 후 정황

(가) 자수·자복 여부

단위 : 명, %

범죄군		자수·자복 여부		전 체
		없 음	있 음	
폭력범죄	수	3,499	53	3,552
	비율	98.5	1.5	100.0
교통범죄	수	2,055	57	2,112
	비율	97.3	2.7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373	6	379
	비율	98.4	1.6	100.0
증권·금융범죄	수	679	12	691
	비율	98.3	1.7	100.0
전체	수	6,606	128	6,734
	비율	98.1	1.9	100.0

(나) 자백 여부

단위 : 명, %

범죄군		자백 여부			전체
		전부 자백	일부 자백	전부 부인	
폭력범죄	수	3,029	292	261	3,582
	비율	84.6	8.2	7.3	100.0

단위 : 명, %

범죄군		자백 여부			전체
		전부 자백	일부 자백	전부 부인	
교통범죄	수	2,535	43	58	2,636
	비율	96.2	1.6	2.2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358	38	40	436
	비율	82.1	8.7	9.2	100.0
증권·금융범죄	수	519	123	148	790
	비율	65.7	15.6	18.7	100.0
전체	수	6,441	496	507	7,444
	비율	86.5	6.7	6.8	100.0

(다) 반성 여부

단위 : 명, %

범죄군		반성 여부		전체
		없음	있음	
폭력범죄	수	183	2,366	2,549
	비율	7.2	92.8	100.0
교통범죄	수	41	1,332	1,373
	비율	3.0	97.0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7	235	242
	비율	2.9	97.1	100.0
증권·금융범죄	수	28	375	403
	비율	6.9	93.1	100.0
전체	수	259	4,308	4,567
	비율	5.7	9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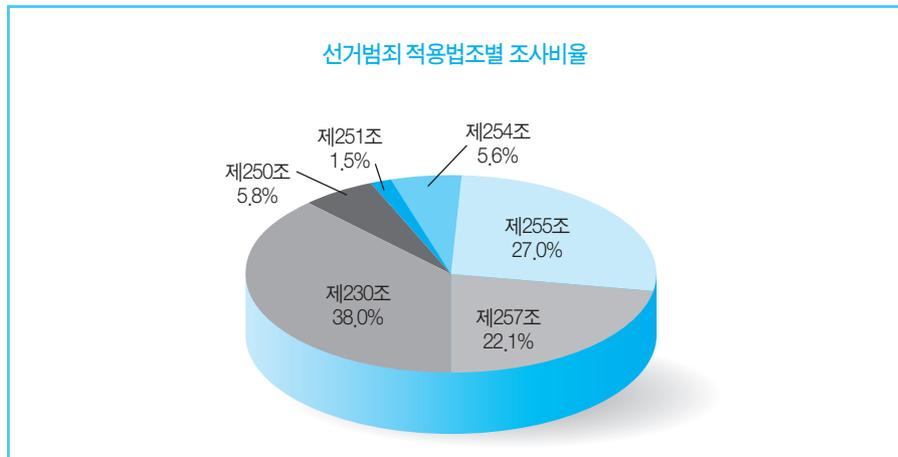
③ 제2차 대상범죄(선거, 방화, 공갈, 조세범죄)

가. 선거범죄

(1) 현황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분석은 범죄의 중요도와 사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0조),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4조), 부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5조),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공직선거법 제257조)을 대상사건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들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적용법조	사건수	비율
공직선거법 제230조	632	38,0
공직선거법 제250조	96	5,8
공직선거법 제251조	25	1,5
공직선거법 제254조	94	5,6
공직선거법 제255조	450	27,0
공직선거법 제257조	367	22,1
합계	1,664	100



선거범죄 조사대상 사건의 적용법조별 비율을 보면 제230조가 3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제255조(27.0%), 제257조(22.1%) 등도 조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종국내역

(가) 선고내역

아래 표는 선거범죄의 적용법조별 종국 내역을 나타내었다.

단위 : 명, %

적용 법조		선고내역			전 체
		징역	집행유예	벌금형	
공직선거법(제230조)	수	38	327	267	632
	비율	6.0	51.7	42.2	100.0
공직선거법(제250조)	수	2	14	80	96
	비율	2.1	14.6	83.3	100.0
공직선거법(제251조)	수	0	3	22	25
	비율	0.0	12.0	88.0	100.0
공직선거법(제254조)	수	0	1	93	94
	비율	0.0	1.1	98.9	100.0
공직선거법(제255조)	수	2	38	410	450
	비율	0.4	8.4	91.1	100.0
공직선거법(제257조)	수	17	85	265	367
	비율	4.6	23.2	72.2	100.0
전체	수	59	468	1,137	1,664
	비율	3.5	28.1	68.3	100.0

전체사건에 대한 종국내역을 보면, 벌금형(68.3%) > 집행유예(28.1%) > 징역(3.5%) 순으로 나타나서 벌금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적용법조별로 벌금형의 비율을 보면, 제254조(98.9%) > 제255조(91.1%) > 제251조(88.0%) > 제250조(83.3%) > 제257조(72.2%) > 제230조(42.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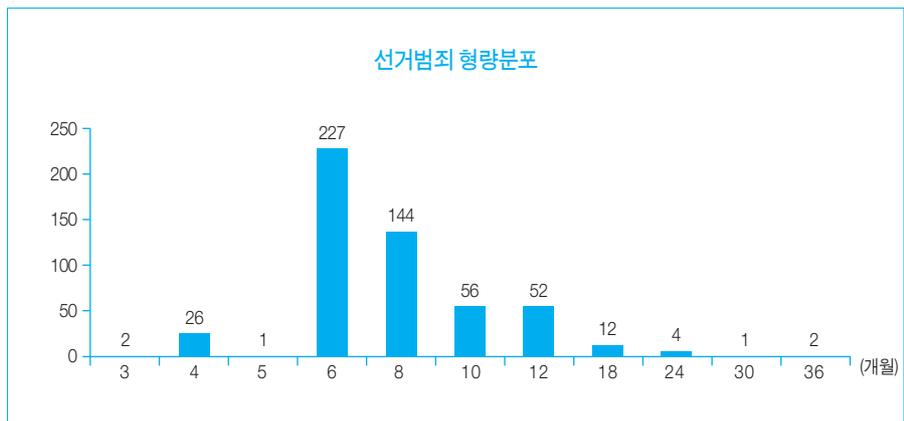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선고된 사건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기록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된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의 선고 사건을 대부분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선고된 사건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나) 징역형의 형량분포

징역형 선고 사건에 대한 형량분포를 보면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 명, %

구 분		형량(개월)										전 체	
		3	4	5	6	8	10	12	18	24	30		36
공직선거법 (제230조)	수	1	16	0	170	90	44	31	10	2	1	0	365
	비율	0.3	4.4	0.0	46.6	24.7	12.1	8.5	2.7	0.5	0.3	0.0	100.0
공직선거법 (제250조)	수	0	0	0	4	10	1	1	0	0	0	0	16
	비율	0.0	0.0	0.0	25.0	62.5	6.3	6.3	0.0	0.0	0.0	0.0	100.0
공직선거법 (제251조)	수	0	1	0	1	0	0	1	0	0	0	0	3
	비율	0.0	33.3	0.0	33.3	0.0	0.0	33.3	0.0	0.0	0.0	0.0	100.0
공직선거법 (제254조)	수	0	0	0	1	0	0	0	0	0	0	0	1
	비율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공직선거법 (제255조)	수	1	6	1	23	6	2	1	0	0	0	0	40
	비율	2.5	15.0	2.5	57.5	15.0	5.0	2.5	0.0	0.0	0.0	0.0	100.0
공직선거법 (제257조)	수	0	3	0	28	38	9	18	2	2	0	2	102
	비율	0.0	2.9	0.0	27.5	37.3	8.8	17.6	2.0	2.0	0.0	2.0	100.0
전 체	수	2	26	1	227	144	56	52	12	4	1	2	527
	비율	0.4	4.9	0.2	43.1	27.3	10.6	9.9	2.3	0.8	0.2	0.4	100.0



전체사건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사건이 2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6월 내지 1년의 범위가 90.9%로 거의 모든 사건이 해당 구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벌금형의 벌금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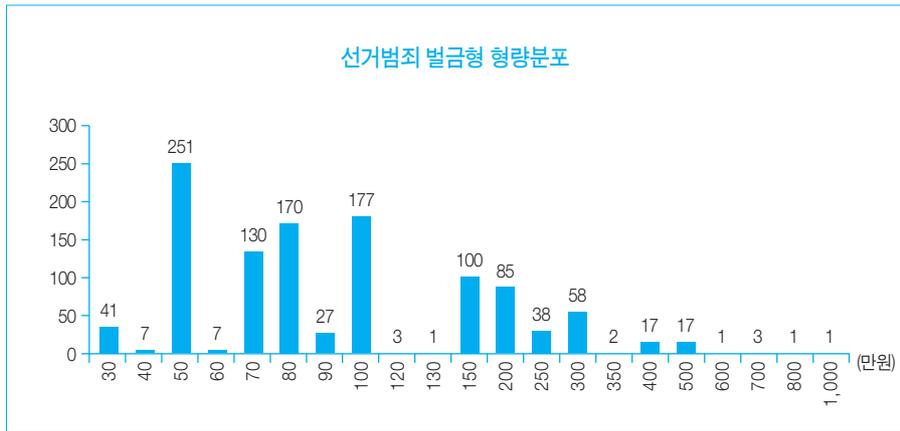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벌금액 분포를 보면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 명, %

구 분		벌금액(만 원)										
		30	40	50	60	70	80	90	100	120	130	150
공직선거법 (제230조)	수	4	0	77	0	21	13	3	46	1	0	22
	비율	1,5	0,0	28,8	0,0	7,9	4,9	1,1	17,2	0,4	0,0	8,2
공직선거법 (제250조)	수	2	1	6	1	6	17	2	4	0	0	3
	비율	2,5	1,3	7,5	1,3	7,5	21,3	2,5	5,0	0,0	0,0	3,8
공직선거법 (제251조)	수	0	0	1	1	3	5	0	3	0	0	7
	비율	0,0	0,0	4,5	4,5	13,6	22,7	0,0	13,6	0,0	0,0	31,8
공직선거법 (제254조)	수	2	4	21	2	15	22	2	9	0	0	7
	비율	2,2	4,3	22,6	2,2	16,1	23,7	2,2	9,7	0,0	0,0	7,5
공직선거법 (제255조)	수	25	2	116	1	54	65	11	64	1	1	28
	비율	6,1	0,5	28,3	0,2	13,2	15,9	2,7	15,6	0,2	0,2	6,8
공직선거법 (제257조)	수	8	0	30	2	31	48	9	51	1	0	33
	비율	3,0	0,0	11,3	0,8	11,7	18,1	3,4	19,2	0,4	0,0	12,5
전체	수	41	7	251	7	130	170	27	177	3	1	100
	비율	3,6	0,6	22,1	0,6	11,4	15,0	2,4	15,6	0,3	0,1	8,8
구 분		벌금액(만 원)										전체
		200	250	300	350	400	500	600	700	800	1,000	
공직선거법 (제230조)	수	30	14	18	0	7	6	1	3	1	0	267
	비율	11,2	5,2	6,7	0	2,6	2,2	0,4	1,1	0,4	0	100
공직선거법 (제250조)	수	2	17	11	1	2	4	0	0	0	1	80
	비율	2,5	21,3	13,8	1,3	2,5	5	0	0	0	1,3	100
공직선거법 (제251조)	수	0	0	2	0	0	0	0	0	0	0	22
	비율	0	0	9,1	0	0	0	0	0	0	0	100
공직선거법 (제254조)	수	9	0	0	0	0	0	0	0	0	0	93
	비율	9,7	0	0	0	0	0	0	0	0	0	100
공직선거법 (제255조)	수	22	2	11	1	2	4	0	0	0	0	410
	비율	5,4	0,5	2,7	0,2	0,5	1	0	0	0	0	100

단위 : 명, %

구 분		벌금액(만 원)										전체	
		200	250	300	350	400	500	600	700	800	1,000		
공직선거법 (제257조)	수	22	5	16	0	6	3	0	0	0	0	0	265
	비율	8,3	1,9	6	0	2,3	1,1	0	0	0	0	0	100
전체	수	85	38	58	2	17	17	1	3	1	1	1	1,137
	비율	7,5	3,3	5,1	0,2	1,5	1,5	0,1	0,3	0,1	0,1	0,1	100



벌금형 선고사건에 대한 벌금액 분포를 보면, 50만 원이 251건(22.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원(177건), 80만 원(170건) 순으로 나타났다.

(3) 법원별 사건 수

판결이 선고된 법원별 사건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지방법원	수	비율
서울중앙	51	3.1
서울동부	21	1.3
서울남부	19	1.1
서울북부	32	1.9
서울서부	27	1.6
의정부	44	2.6

단위 : 명, %

지방법원	수	비율
인천	93	5.6
수원	164	9.9
춘천	49	2.9
대전	131	7.9
청주	27	1.6
대구	339	20.4
부산	68	4.1
울산	80	4.8
창원	108	6.5
광주	315	18.9
전주	73	4.4
제주	23	1.4
합계	1,664	100.0

※ 관할 지원의 사건을 포함한 수치임

법원별 사건 수를 보면, 대구지법이 339건(2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지법(315건, 18.9%), 수원지법(164건, 9.9%) 순으로 나타났다.

(4) 연도별 사건 수

조사대상 사건의 연도별 분포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적용 법조		선고 연도						전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직선거법 (제230조)	수	61	20	210	24	224	93	632
	비율	9.7	3.2	33.2	3.8	35.4	14.7	100.0
공직선거법 (제250조)	수	2	2	5	10	61	16	96
	비율	2.1	2.1	5.2	10.4	63.5	16.7	100.0
공직선거법 (제251조)	수	1	1	1	2	16	4	25
	비율	4.0	4.0	4.0	8.0	64.0	16.0	100.0
공직선거법 (제254조)	수	0	0	0	9	73	12	94
	비율	0.0	0.0	0.0	9.6	77.7	12.8	100.0

단위 : 명, %

적용 법조		선고 연도						전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직선거법 (제255조)	수	15	3	9	22	363	38	450
	비율	3.3	0.7	2.0	4.9	80.7	8.4	100.0
공직선거법 (제257조)	수	74	8	7	32	188	58	367
	비율	20.2	2.2	1.9	8.7	51.2	15.8	100.0
전체	수	153	34	232	99	925	221	1,664
	비율	9.2	2.0	13.9	5.9	55.6	13.3	100.0

연도별로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0년이 925건(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8년 232건(13.9%), 2011년 221건(13.3%) 순으로 나타났다.

(5) 피고인 신병 및 제1심 변호인 유무

단위 : 명, %

양형인자	내 용	수	비 율
피고인 신병	불구속	1,426	85.7
	구속	201	12.1
	구속 후 석방	33	2.0
	별건구속	4	0.2
	합계	1,664	100.0
변호인	사선	666	40.0
	국선	537	32.3
	없음	461	27.7
	합계	1,664	100.0

(6) 피고인 특성

단위 : 명, %

양형인자	내 용	수	비 율
국적	내국인	1,663	99.9
	외국인	1	0.1
	합계	1,664	100.0

단위 : 명, %

양형인자	내 용	수	비 율
성별	남자	1,294	77.8
	여자	370	22.2
	합계	1,664	100.0
연령	20세 미만	3	0.2
	30세 미만	58	3.5
	40세 미만	139	8.4
	50세 미만	523	31.4
	60세 미만	596	35.8
	70세 미만	298	17.9
	70세 이상	47	2.8
	합계	1,664	100.0
학력	무학	18	1.1
	초등학교	198	11.9
	중학교	185	11.1
	고등학교	498	29.9
	대학교	505	30.3
	대학원	150	9.0
	불명	110	6.6
	합계	1,664	100.0
직업	무직	315	18.9
	기업 대표이사	36	2.2
	기업체 임원	14	0.8
	회사원	115	6.9
	자영업	311	18.7
	교육직	12	0.7
	대학 교수	11	0.7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6	0.4
	기타 전문직	15	0.9
	농업·어업·임업·축산업	277	16.6
	국회의원	3	0.2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의원	108	6.5

단위 : 명, %

양형인자	내 용	수	비 율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17	1.0
	공공기관 임직원	9	0.5
	정당 및 특수단체 임직원	32	1.9
	기타 공무원	49	2.9
	언론인	24	1.4
	학생	11	0.7
	주부	119	7.2
	공원	1	0.1
	운전사	17	1.0
	일용직	26	1.6
	종업원	13	0.8
	종교인	8	0.5
	기타	115	6.9
	합계	1,664	100.0
혼인관계	미혼	108	6.5
	기혼(사실혼 포함)	1,343	80.7
	이혼	62	3.7
	사별	31	1.9
	별거(가출)	14	0.8
	불명	106	6.4
	합계	1,664	100.0
주거	주거 부정	1	0.1
	주거 일정	1,571	94.4
	불명	92	5.5
	합계	1,664	100.0
부양가족	없음	144	8.7
	있음	1,390	83.5
	불명	130	7.8
	합계	1,664	100.0
건강상태	양호	1,281	77.0
	중증	13	0.8

단위 : 명, %

양형인자	내 용	수	비 율
	경증	370	22.2
	합계	1,664	100.0
사회적 유대관계	높음	48	2.9
	보통	186	11.2
	낮음	2	0.1
	불명	1,428	85.8
	합계	1,664	100.0
장애인 유형	불해당	1,613	96.9
	해당	51	3.1
	합계	1,664	100.0
알코올중독 경력	없음	1,663	99.9
	있음	1	0.1
	합계	1,664	100.0
마약복용 경력	없음	1,662	99.9
	있음	2	0.1
	합계	1,664	100.0
정신병력	없음	1,659	99.7
	있음	5	0.3
	합계	1,664	100.0

(7) 전과

단위 : 명, %

양형인자	내 용	수	비 율
초범 여부	아님	904	54.3
	해당	760	45.7
	합계	1,664	100.0
동종 전과 여부	아님	1,525	91.6
	해당	139	8.4
	합계	1,664	100.0

단위 : 명, %

양형인자	내 용	수	비 율
이종 전과 여부	아님	813	48.9
	해당	851	51.1
	합계	1,664	100.0
누범 전과	없음	1,662	99.9
	있음	2	0.1
	합계	1,664	100.0

(8) 경합범 여부

단위 : 명, %

양형인자	내 용	수	비 율
경합범 여부	아님	1,058	63.6
	해당	606	36.4
	합계	1,664	100.0
제37조 후단전과 유무	없음	1,658	99.6
	있음	6	0.4
	합계	1,664	100.0

(9) 공범 여부

단위 : 명, %

양형인자	내 용	수	비 율
공범 여부	단독범	1,162	69.8
	공범	502	30.2
	합계	1,664	100.0

(10) 범행 후 정황

단위 : 명, %

양형인자	내 용	수	비 율
지수·자복 여부	없음	1,286	77.3
	있음	128	7.7
	불명	250	15.0
	합계	1,664	100.0

단위 : 명, %

양형인자	내 용	수	비 율
자백 여부	전부 자백	1,354	81.4
	일부 자백	101	6.1
	전부 부인	209	12.6
	합계	1,664	100.0
반성 여부	없음	55	3.3
	있음	1,082	65.0
	불명	527	31.7
	합계	1,6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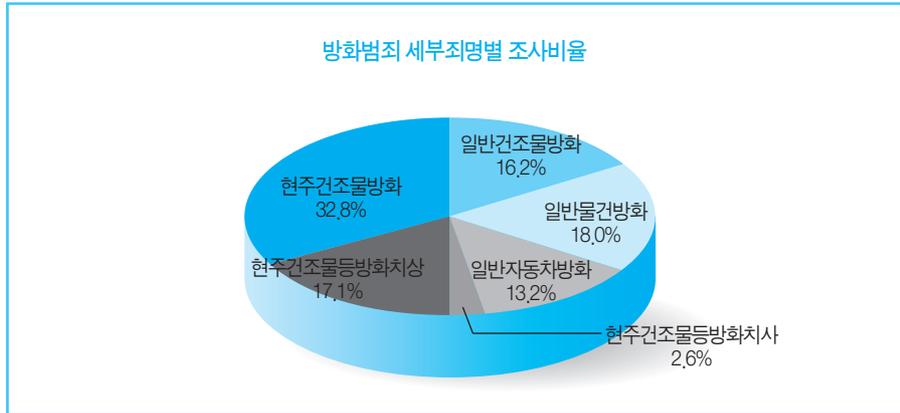
나. 방화범죄

(1) 현황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분석은 범죄의 중요도와 사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일반자동차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를 대상사건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들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 명, %

세부죄명	사건수	비 율
일반건조물방화	98	16.2
일반물건방화	109	18.0
일반자동차방화	80	13.2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16	2.6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103	17.1
현주건조물방화	198	32.8
합계	604	100.0



(2) 연도별 사건수

단위 : 명, %

세부죄명		선고연도						전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일반건조물방화	수	13	16	26	15	15	13	98
	비율	13.3	16.3	26.5	15.3	15.3	13.3	100.0
일반물건방화	수	14	17	15	16	26	21	109
	비율	12.8	15.6	13.8	14.7	23.9	19.3	100.0
일반자동차방화	수	8	15	15	20	12	10	80
	비율	10.0	18.8	18.8	25.0	15.0	12.5	100.0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	수	6	5	2	3	0	0	16
	비율	37.5	31.3	12.5	18.8	0.0	0.0	100.0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상	수	20	25	17	18	11	12	103
	비율	19.4	24.3	16.5	17.5	10.7	11.7	100.0
현주건조물방화	수	10	17	24	27	48	72	198
	비율	5.1	8.6	12.1	13.6	24.2	36.4	100.0
전체	수	71	95	99	99	112	128	604
	비율	11.8	15.7	16.4	16.4	18.5	21.2	100.0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선고연도별 기준으로 2006년 ~ 2011년 기간 동안에 비슷한 비율로 사건 수를 조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최근 사건들에 비중을 두어 조사하였다.